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21511205 무역학과 주기윤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서도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

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져 맑은 날 울릉도에

서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

지로 천연기념물 336호이다. 60여 종의 식물, 130여 종의 곤충,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 자연 생태계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먼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알아보기 전에 왜이렇게 까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고 하는지에 대한 독도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작은 바위섬인 독도는 언뜻 보면 쓸모없는 땅 같지

만 독도는 경제적, 군사전략적, 생태환경적으로 매우 소중한 국토이다.

먼저 독도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독도 주변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독도 주변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들이 묻

혀 있다.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묻혀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바다 깊은 곳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해 고체가 된 특이한 물질이다. 매장량이 많고 공해가 없어 ‘꿈의 에너지원’

으로 불린다. **군사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독도는 동북아 강대국의 군사력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일본·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생태환경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다양하

고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특히 독도의 수호 새로 불리는

괭이갈매기를 비롯한 많은 새들의 삶의 터전이다. 수천㎞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구원

의 섬’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국토는 땅인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까지 포함된다. 그럴

리는 없지만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면 독도뿐만 아니라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는 셈이다.

이러한 독도가 한국영토인 이유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에는 4가지 입증 증거가 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거, 둘째 영토 소속국제법으

로 인정을 받았는가에 대한 국제법적 증거, 셋째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에 대한 지

리적 증거, 넷째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따라 인정받을수 있다.

첫째 증거인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 대해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노래를 미루어 보아도 알수있다. 지증왕 13년에 ‘섬나라 우산국~신라장수 이사부 지하에서 웃

는다’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인 것이다. 이에 대

해 일본에서는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점령했을 때 독도까지 편입했다는 증거가 있는가’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을 조공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조선왕조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등을 바쳤다]-조선왕조실록. 또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

은 본래에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었

다”라고 쓰여 있다. 또한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

키기 시작했다.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

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가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

갔다. 그러나 그는 호키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

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

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

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둘째 증거인 한국의 국제법적 증거를 보면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

도(독도)를 다스린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공

표했다. 이는 1905년 일본 발표보다 5년 빠른 시점이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호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했고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을 소유한다고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이 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어째

서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측에서는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 제국 정

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

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

재가 생략됐던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

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증거인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에 대한 지리적증거로 미루어 보자면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는 약 87.4km 거리이고 일본영토에서 독도와 가장

근접한 섬을 보면 약 157km 거리로 지리적 증거를 내보일 수 있다.

넷째 실효적 지배증거로 미루어보자면 현재도 대한민국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으로부터 우리의 독도를 지키기 위해 과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 수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6.25전쟁 참전했던 홍순칠 대장이 이끄는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된 것입니다. 의용수비대는

1953년 4월 20일에 결성되었으면, 1956년 12월 30일에 해산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

으로는 일본 어선의 독도 근해 어로작업 방지 등이 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8월, 일

본 순시선 및 어업실습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침투했을 때마다 수차례 격퇴했다. 동도 바위에 ‘한국령’을 새긴 영토비를 설립하고, 동도에 경비초소와 등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홍대장은 경찰과

협력해 경비 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와 인근 해상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 근거를 일일이 말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이다. 반면에 일본의 주장은 이토록 부실하고 터무니없으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혹여 주위에

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이가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해주자. 그 누가 아무리 자기

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말이다.